

한 인터넷매체의 저널리즘 이탈, 문제 많아

인원 충원했다며 기업에 광고비 증액 요청

편집부



인터넷신문 '스카이데일리(대표 : 민경두)'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기업인의 부동산 소유와 재산 관련 기사를 쏟아내며 시선을 끌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포털(네이버)과 검색제휴(2017.8)가 허용된 이후 수상한 행보가 잦아졌다는 평이다. 실제로 최근 게재된 기업관련 보도(3.1~4.17)를 살펴보면 '왜 이리?' 하고 의문이 가는 보도들이 줄지어 있다.

- ▲ 화성 기부천사 조양래, 화성 개발지 23만평 땅부자
- ▲ 벼랑 끝 총수 조현준... 부동산 2000억, 배당 1200억
- ▲ 인스턴트커피 성공신화 동서그룹 2천억 호화 부동산
- ▲ 현대건설 박동욱, 아이들 목숨 위협 발암물질 공사 논란

이 매체에 올라온 기업 관련 기사들이다. 제목부터가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한지를 암시하고 있다. 마치 기업 CEO들의 경영활동과 부동산 소유 자체가 도덕적으로 문제 있다는 식의 뉘앙스를 풍기는 글로 도배되어 있다.

이 같은 기업 폄해 의도성 기사를 두고 홍보 담당자들

은 한목소리로 '저널리즘 이탈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지적하고 있다.

매체력도 제시하지 않고

인원 충원했으니 광고비 증액해달라?

지난해 말 스카이데일리는 사옥 이전 및 편집국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조직을 재계1, 2팀, 부춘1, 2팀, 부자경제1, 2팀 등 누가 봐도 편향성을 드러내는 조직 내용을 사옥이전 안내문과 함께 공지해 기업들의 빈축을 산 바 있다.

이 매체가 최근에는 자사 인원을 충원했다는 이유로 광고비 증액을 요구하는 영업을 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편집국으로부터 광고 요청을 받았다는 한 홍보담당자는 "회사 임원의 사적 영역 등 민감한 기사를 써놓고는 '인원 충원'을 이유로 100% 혹은 그 이상의 광고비 증액을 요구해왔다"며 "요즘 많은 매체들이 언론

과 기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범을 마련하고 저널리즘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서 스카이데일리의 역행이 안쓰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광고주협회 광혁 상무는 “신문이 인원을 늘렸다면 그에 걸맞게 기사의 퀄리티를 높여 매체력으로 인정받아야지 광고비 증액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메우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문제점이 드러나면 인터넷신문위원회에 기사심의를 요청할 것이며,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신고센터에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 보도행태 문제 많아

한편, 스카이데일리의 기업보도행태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크게 3가지다.

▲기업 및 CEO에 대한 자극적·선정적 제목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슈와 기업 경영인 부동산 현황 엮기 ▲특정 기업을 겨냥한 시리즈성 보도다.

한 기업 PR 전문가는 “인터넷 상의 기사들 중 고용문제, 골목상권 침해 등의 이슈에 ‘상생외면’, ‘꼼수’, ‘포식자’ 등의 단어를 엮은 제목, 그리고 계열사 혹은 하청업체간 문제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최고경영자의 지시인 양 제목을 뽑는 것 등은 기업 홍보실을 겨냥한 기사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에는 일부 매체들이 ‘기업 + 부동산 = 부당이익 편취’라는 프레임 속에서, 기사 서두 혹은 말미에 기업경영인의 아파트 또는 땅 소유 현황을 나열하고, 이어 해당 기업이 매출감소, 일감몰아주기, 고배당수의 등



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보도행태와 관련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기득권과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언론사의 주요 기능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오래전에 구입한 부동산이 시간이 경과해 가격이 오른 것까지 사익편취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특정 기업을 겨냥한 시리즈성 기사도 문제”라며 “골목상권문제나 계열사 및 하청업체 관련 기사들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주변 상인, 또는 일부 주민들의 일방적 주장을 전하며 ‘사업 꼼수를 부리고 있다’, ‘골목상권을 침해했다’, ‘가난한 서민의 푼돈을 뜯었다’ 등의 자극적 문구로 기업 폼페이성 시각을 전달하고 있는데, 이는 언론의 공정정보도 의무 및 사실 확인 의무 위반일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해 피해자인 기업은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KAA**

